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편람**

**2018**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지 천명

CGV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서정입니다.

올해는 CJ CGV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CGV는 국내 영화산업을 주도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CGV는 이러한 사업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준법 경영을 통한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준법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그 존립과 성장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GV가 단순히 극장 수를 늘리거나 매출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에 CGV는 준법 경영을 위해, 회사 구성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의미합니다. CGV는 금년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담 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파트>를 이미 신설하였으며, 금일 자율준수관리자로 전략지원담당 조성진님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준법경영위원회 구성 및 준법경영 코디네이터 지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 사전 점검 및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준법 경영을 통해, CGV는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 성장할 것이며, 구성원 여러분들께는 보다 큰 자부심을 드릴 것입니다.

CGV 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비롯한 준법 경영은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CGV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인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며, 그 완성까지는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CGVian 모두 힘을 모아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글로벌 1등 기업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씨제이씨지브이(주)

대표이사 서 정



##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엄중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등 국내외 제반 법규 및 회사내규를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법규 및 회사내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2.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본인은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적인 담합을 제안하거나 담합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가격, 할인 등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 본인은 계열사 및 특정사업자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거나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컴플라이언스파트에서 진행되는 준법경영 관련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7. 본인은 법률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에 알리겠습니다.
8.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 목 차

## I. CJ CGV CP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의미.....7
- 2. CP 조직도 및 역할.....9

## II. 공정거래와 CJ CGV의 의무

- 1. 공정거래와 CJ CGV 의 의무 ..... 15
- 2. CJ CGV 사업유형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 18

##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 1. 개요..... 20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1
- 3. 기업결합의 제한..... 27
- 4. 부당공동행위..... 37
- 5.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46
- 6. 그 밖의 규정..... 61
- 7. 위반에 대한 제재(통합)..... 65

## I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 1. 목적..... 71
-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71
- 3. 영화상영권 관련 표시·광고의 특별 제한..... 72
- 4. 위반에 대한 제재 ..... 74
- 5. DO/DON'T..... 79

## 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1. 개요 .....	83
2.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86
3. 부당한 특약의 금지 .....	91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94
5. 감액금지 .....	99
6. 그 밖의 규정.....	103
7.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대처방법 .....	112
8. CHECK LIST .....	115

## V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1. 목적 .....	123
2. 약관의 의의 및 특징.....	123
3. 약관법의 주요 내용 .....	125
4. 위반에 대한 제재 .....	133

## VII. 소비자기본법

1. 목적 .....	139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39
3. 사업자의 책무 .....	140
4.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141

## VI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1. 목적 .....	145
2. 정의 및 규제이유 .....	145
3.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준수 의무 .....	146
4.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151
5. 위반에 대한 제재 .....	152

[첨부1] 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153
---------------------------------------	-----

[첨부2] CHECK LIST .....	163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ECK LIST .....	165
--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CHECK LIST.....	170
-------------------------------------	-----



# I . CJ CGV CP





# I. CJ CGV CP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의미

###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이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한다.

### 나. CP 7 대 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 ‘7대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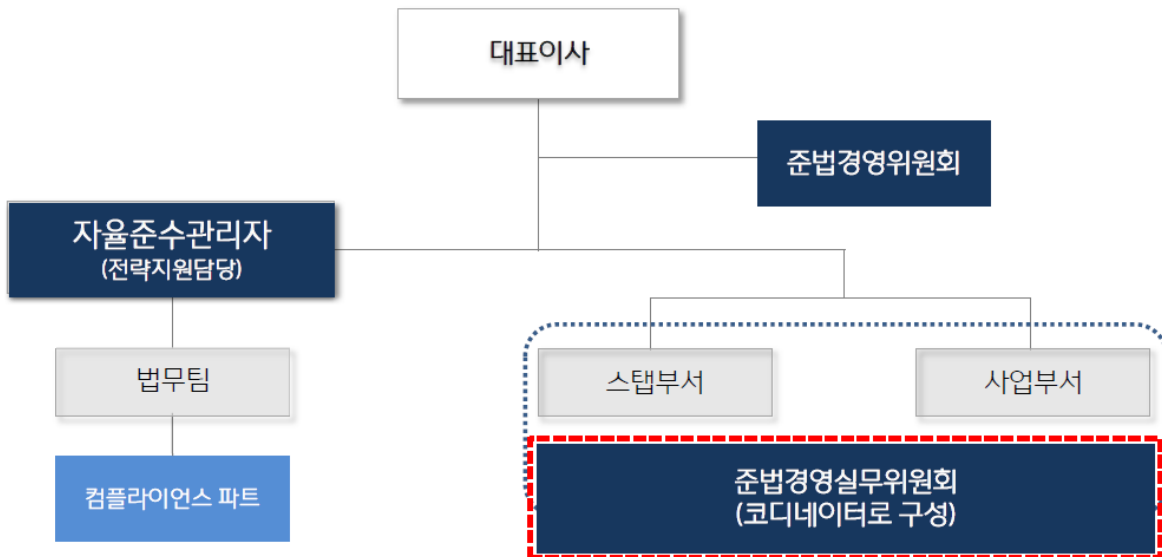
-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②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③ 자율준수편람의 배포
- ④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⑤ 내부감독체계 구축
- 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⑦ 문서관리체계 구축

※ 용어 정리

용어	정의
Compliance (=준법경영)	기업의 관련 법규 및 회사 내규를 준수하는 것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동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li> <li>● CP 를 통하여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li> </ul>

## 2. 조직도 및 역할

### 가. CP 조직도



###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 역할 및 운영방법

구분	역할 및 운영방법	비고
자율준수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자</li> <l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 고취,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 축</li> <li>● 경쟁당국 및 규제기관의 협조 및 지원</li> <li>●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지원담당</li> </ul>
준법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율준수 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대표이사</li> <li>■ 부위원장 - 경영지원실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설정</li> <li>● 준법경영 추진계획 및 방침 사항 결정</li> <li>● 준법경영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li> <li>● 기타 전담조직 준법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 및 방향성 제시</li> <li>● 총 8 인으로 구성</li> <li>● 연 1 회 정기회의 개최</li> <li>● 위원장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플라이언스 파트장</li> </ul> </li> <li>■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지원담당</li> <li>- 국내사업본부장</li> <li>- 경영관리담당</li> <li>- 인사담당</li> <li>- 경영진단팀장</li> <li>- 법무팀장</li> </ul> </li> </ul>
<p><b>준법경영실무위원회</b> (구성: 코디네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별 Compliance 일상을 점검하여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과 공유,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li> <li>● Compliance 가이드라인, 업무메뉴얼 등 각종 지침 전파 및 교육, 홍보</li> <li>● 이슈발생 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과 협업 및 창구역할 수행</li> <li>● 주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li> <li>● 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 준법경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디네이터 : 총 18명 (2018년 12 월 기준)</li> </ul>
<p><b>컴플라이언스파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준수 관리자 직무 수행 보조</li> <li>● 위법사항 자체점검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li> <li>● 해당업무 관련자료 취합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li> <li>● 경쟁법 관련 최종 검토</li> <li>● 준법경영위원회 및 코디네이터 지원</li> </ul>	<p>전략지원담당 법무팀 산하 조직</p>

## 다. 컴플라이언스파트 조직구성 및 R&R(2018. 12. 기준)

성명	직책/직급	R&R
이동현님	컴플라이언스파트장	Compliance 업무 전반
손정숙님	구성원	Compliance 기획,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대응, 계열사 내부거래, 인사·노무 등
김보선님	구성원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Compliance 레터, 청탁금지법, 교육 등
이태희님	구성원/변호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대응





## II. 공정거래와 CJ CGV의 의무





## II. 공정거래와 CJ CGV 의 의무

### 1. 공정거래와 CJ CGV 의 의무

#### 가. 공정거래법 개요

##### (1) 의의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을 통칭하여 지칭하기도 하나, 본 편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공정거래법』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

##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 선단식 경영 : 업종이 별로 연관이 없는 회사끼리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연결해 사업을 해나가는 경영형태

###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유형		내용
경쟁 및 기업거래 정책관련 (5)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반품금지 등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발주자 의무사항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 허위정보제공 금지 등 가맹본부 의무 및 금지사항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
소비자 정책관련 (8)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권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원(분쟁조정), 소비자 단체 등
	표시광고법	부당표시광고 금지, 광고실증제, 중요정보고시 등
	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금지, 표준약관, 약관의 설명 고지의무 등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규제
	할부거래법	계약서 교부, 철회권, 항변권 등 할부거래 관련 사항 및 상조업 관련 사항
	소비생활 협동조합법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인가 및 사업범위 등
	제조물책임법	무과실손해배상책임, 면책특약, 소멸시효(3년)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권익의 보호 등

## 2. CJ CGV 사업유형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사업유형	소관법령 및 규제유형	관련부서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중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차별적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등)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li> <li>■ 표시광고법 중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li> </ul>	<p>국내사업본부 영업담당 신성장담당</p>
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광고법 중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li> </ul>	<p>국내사업본부 영업담당 신성장담당</p>
광고,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광고법 중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영화상영관 관련 표시광고의 특별 제한</li> <li>■ 약관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li> </ul>	<p>국내사업본부 영업담당 신성장담당 마케팅담당</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li> </ul>	<p>건축디자인담당 SCREENX 사업부</p>



###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 1. 개요

##### 가. 목적

공정거래법 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나. 주요 내용

-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4)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5) 기타 규정

#####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일반법과 특별법 동시 적용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별개법과의 관계에서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별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개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가. 근거조문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나. 구성요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무엇을?	남용행위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li> <li>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li> <li>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li> <li>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li> <li>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li> </ol>
어떻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범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li> <li>•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li> </ul>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li> <li>•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li> <li>• 손해배상책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li> </ul>

## 라. 남용행위의 유형별 사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남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며, 남용행위는 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사업활동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내용	사례
1	가격남용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비스킷 제조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2	출고조절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둔 10일전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3	사업활동 방해행위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li> <li>-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li> <li>-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li> </ul>
4	진입제한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li> <li>-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li> </ul>
5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li> <li>-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li> </ul>

		거래하는 행위	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	--	---------	---

## 마. Q&A

###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 ■ 어떻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알 수 있나요?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 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남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바. DO/DON'T

### [DON'T]

## ■ 가격남용행위

원가상승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인상율이 원가상승요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시장진입방해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 소정의 절차를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하게 제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X
가격납용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활동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 적이 있는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한 적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이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적이 있는가?			

### 3. 기업결합의 제한

#### 가. 근거조문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の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の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の 分割·分割合併)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系列會社の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나. 구성요건 및 용어정리

기업결합의 제한	
누가?	누구든지
무엇을?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어떻게?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결합:** 기업 간의 합병, 영업양수, 주식의 취득 등으로 인한 회사의 구조형태변화  
**특수관계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회사 등)  
**계열회사:**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유형	내용	신고대상
1	주식취득·소유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 수(의결권 업는 주식제 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 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 임하는 경우
3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4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5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 가 되는 경우

## 라. 기업결합 신고기한

□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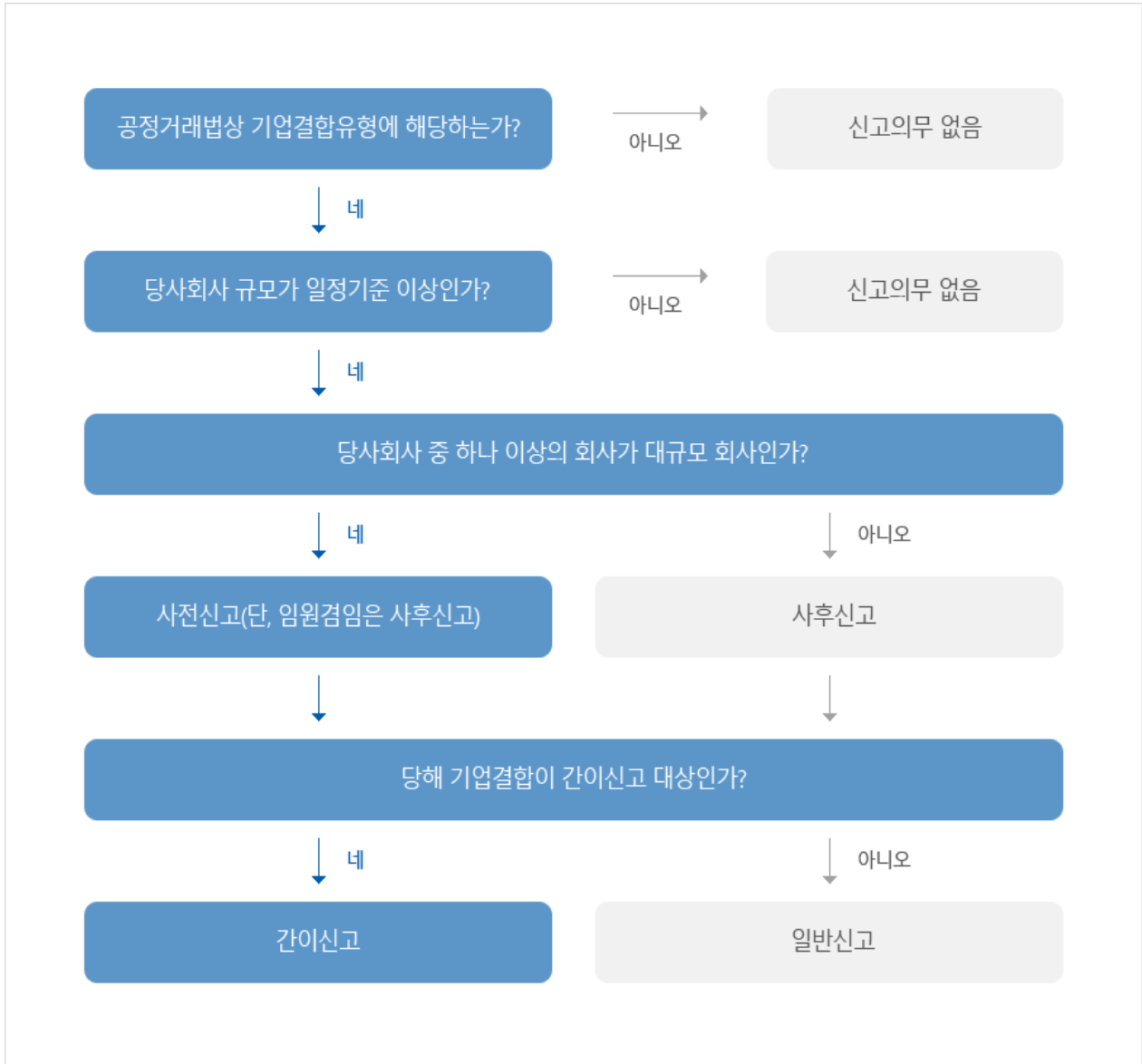
□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 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유형별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 〈유형별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 일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 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 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 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 일



## 마.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기준



## 바. 기업결합심사

### (1) 의의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 ■ 수평결합<sup>1</sup>의 경우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직결합<sup>2</sup>의 경우

-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혼합결합<sup>3</sup>의 경우

-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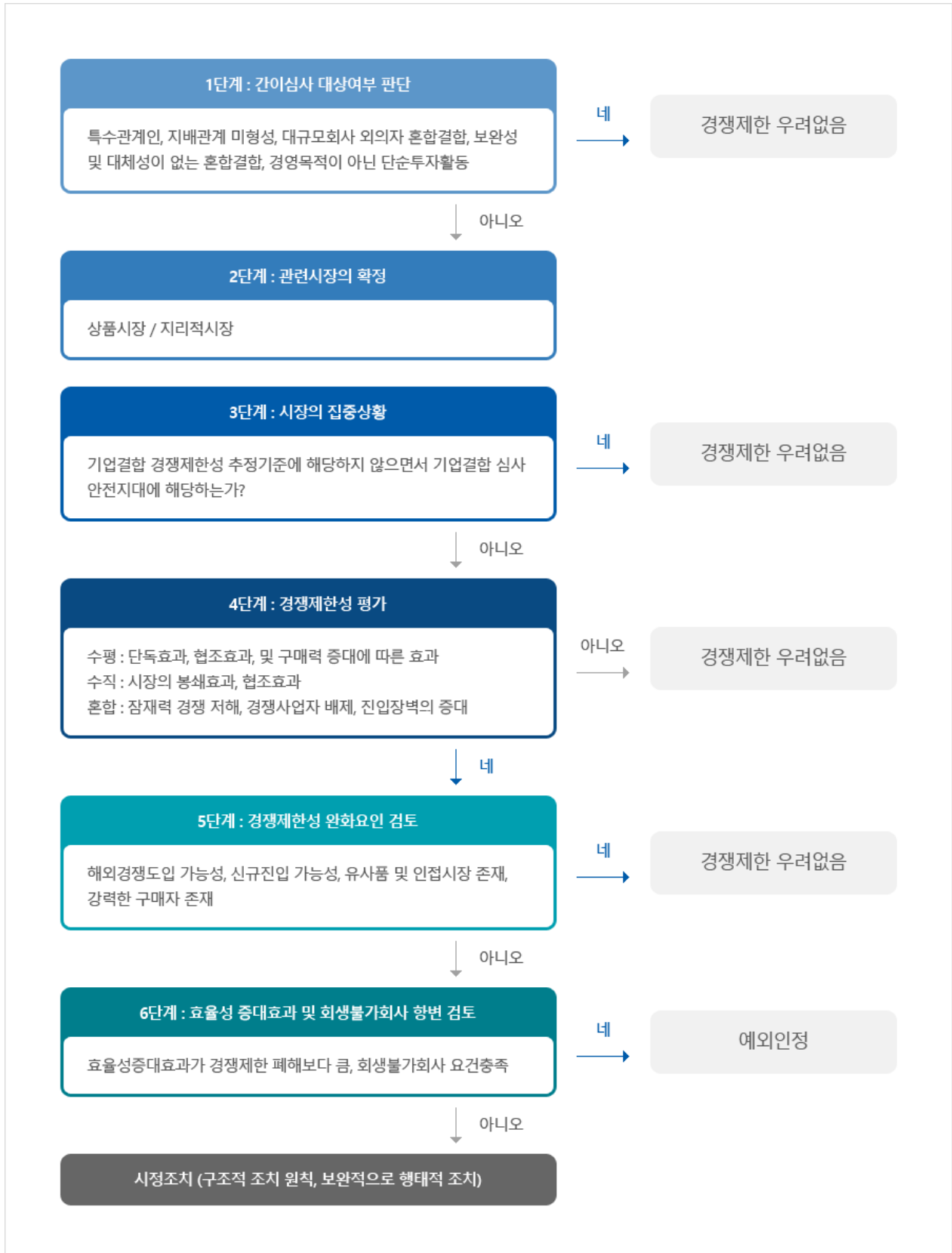
<sup>1</sup>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

<sup>2</sup>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sup>3</sup> 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2) 기업결합의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7항)



###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 기준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 이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하는 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추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 당해 거래분야에서 1 위 - 시장점유율이 2 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대규모회사 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 사. 범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범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정조치 <b>(제 16 조 제 1 항)</b></li> <li>•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 1 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내에서 부과 <b>(제 17 조의 3)</b></li> <li>•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사업자는 1 억원이하, 임직원은 1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b>(제 69 조의 2 제 1 항 제 2 호)</b></li> </ul>

## 벌칙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66조 제1항 제2호)

## 아. Q&A

### ■ 기업결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 다른 회사와 M&A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금지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 ■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경쟁제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도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 기업결합신고란 무엇인가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는데,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 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 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 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면 기업결합을 할 수 없나요?

경쟁제한성의 추정을 시장진입가능성, 가격인상 억제가능성, 경쟁효과의 강화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기업결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4. 부당공동행위

### 가. 근거조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

를 무효로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나. 구성요건

부당 공동행위	
누가?	둘 이상의 사업자가
누구에게?	경쟁사업자에게
어떻게?	계약, 협정, 결의 등 합의를 통해
무엇을?	1.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5. 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6.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8. 입찰담합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 1~8 까지 외의 행위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 제한



## 다. 법위반시 제재 및 대처방법

### (1) 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b>(제 21 조)</b></li> <li>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b>(제 22 조 본문)</b></li> <li>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b>(제 22 조 단서)</b></li> </ul>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b>(제 66 조 제 1 항 제 9 호)</b></li> <li>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b>(제 67 조 제 6 호)</b></li> </ul>

### (2) 대처방법

#### (가) 근거조문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

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과징금 감액 절차 및 내용

### □ 조사협력 등

-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 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 □ 자진시정

-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 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 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별 사례

부당한 공동행위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등의 8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내용	사례
1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상품 ·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3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 · 출고 · 운송 ·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5	설비의 신 ·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사업자간에 생산 · 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 · 증설을 방해 ·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6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 거래시에 그 종류 ·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 관리하거나 수행 ·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 · 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유형	내용	사례
8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 마. Q&A

### ■ 부당한 공동행위란 무엇인가요?

소위 담합, 짬짜미, 카르텔 등으로 불리며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당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의 암’으로 비유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 합의의 방법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나요?

계약, 협정,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합의의 형태로 포함됩니다.

### ■ 사업자간 합의를 할 때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진행하면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사실 관계

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일단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 ■ 이런 규제 하에서는 업계 사람들과의 동향 공유나 미팅 등 대외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모든 공동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공동행위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합니다.
-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참여사업자간의 경쟁제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 등을 심사합니다.
- 만약 비교형량 결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로 인해 혁신 속도의 증가나 중복 비용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량 감축, 시장 분할 또는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바. DO/DON'T

### [DO]

-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컴플라이언스 파트에 보고한다.
-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위반 가

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 [DON'T]

### ■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행위를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X
가격협약	<input type="checkbox"/>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조절	<input type="checkbox"/>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거래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의약품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시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업체 모임시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사 모임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였는가?			
문서작성시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 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 5.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가. 근거조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구성요건

### (1) 거래거절 (제23조 제1항 제1호)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누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자가
누구에게?	특정한 사업자에게	
어떻게?	부당하게 + 정당한 이유 없이	
무엇을?	거래개시의 거절 계속적인 거래중단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 (2) 차별적 취급 (제23조 제1항 제1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
누가?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가 공동
누구에게?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소비자 제외)	
어떻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무엇을?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 등의 차별	가격차별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 차별	가격 등 거래조건·내용 등의 차별

### (3) 경쟁사업자 배제 (제23조 제1항 제2호)

	부당 영업	부당 고가매입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사업자
어떻게?	부당하게 +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무엇을?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 공급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

### (4) 부당한 고객유인 (제23조 제1항 제3호)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경쟁사의 고객에게
어떻게?	부당하게
무엇을?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5) 거래강제 (제23조 제1항 제3호)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누가?	사업자는		
누구에게?	사업자 또는 소비자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사업자 또는 소비자
어떻게?	부당하게		
무엇을?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불이익을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6) 거래상 지위남용 (제23조 제1항 제4호)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어떻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무엇을?	상품 구입을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거래에 관한 목표제시 후 달성 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 간섭

## (7) 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1항 제5호)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거래상대방에게
어떻게?	부당하게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li> <li>-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li> </ul>

## (8) 사업활동 방해 (제23조 제1항 제5호)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다른 사업자의
어떻게?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엇을?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제23조 제1항 제7호)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어떻게?	부당하게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li> <li>■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li> </ul>

##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23조의 2)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누구에게?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li> <li>■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li> <li>■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li> <li>■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li> </ul>
무엇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 다.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행정적 제재</b> (시정조치와 과징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span style="float: right;">(제 24 조)</span></li> <li>•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span style="float: right;">(제 24 조의 2)</span></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벌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span style="float: right;">(제 67 조 제 2 호)</span></li> <li>•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li> </ul>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67조 제6호)

## 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내용	사례	
1	거래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2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에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 취급한 사례
3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

	유형	내용	사례
		<p>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2호)</p>	<p>한 사례</p>
4	부당한 고객유인	<p>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p>	<p>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p>
5	거래강제	<p>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p>	<p>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p>
6	거래상지위 남용	<p>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4호)</p>	<p>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p>



	유형	내용	사례
7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8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 지원행위는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에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당 내부거래'라고 함 - 이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억제'의 '부당 지원행위'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마.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구분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3일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사업기회 유동 또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사익편취) 규정을 신설하였다. 양자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규제대상	사업자 일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하지 않음)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몰아주기) ② 통행세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 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위반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li> <li>○ 과징금 부과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li> <li>○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li> <li>○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li> </ul>	

## 바. Q&A

### ■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

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형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IMF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 불공정거래행위의 안전지대란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범위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즉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 강제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 안전지대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20 억원 미만인 경우
- 유의사항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사. CHECK LIST

### (1) 일반부당지원행위

항목	점검사항	○	△	×
자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자산및상품등의 지원	<input type="checkbox"/>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인력지원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물량물아주기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항목	점검사항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input type="checkbox"/>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 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 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안전지대)			
기타	<input type="checkbox"/>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 6. 그 밖의 규정

### 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1) 기본개념

##### □ 사업자단체

- 그 형태가 어떠하던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
- 동종업종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형태에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
-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 규제이유

-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이나 상호협력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해놓고 있음

#### (2) 금지행위 유형

	유형	내용	사례
1	부당한 공동행위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일정한 부당경쟁제한행위, 예를 들어 동시에 일정수준 가격인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금지	○○유치원연합회가 연합회총회를 통해 그 지역의 유치원입학금을 결정하고 회원유치원에 이를 통보한 행위

	유형	내용	사례
2	<b>사업자수 제한</b> <b>(제26조 제1항 제2호)</b>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참가·진입 제한 및 부당하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시태권도협회 ○○○지회가 신규도장 개설시 기존도장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신규 개설을 제한한 행위
3	<b>사업활동방해</b> <b>(제26조 제1항 제3호)</b>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건설기계협회가 타회사 소속 연명신고자 영입 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시·도지회로 하여금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계도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4	<b>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b> <b>(제26조 제1항 제4호)</b>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출판업계에서 온라인서점의 할인율 등을 결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어기는 온라인서점에 대해서는 도매상에게 도서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



### (3)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공정거래법 제 27 조)</li> <li>•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은 5 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 28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5 억원 미만)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ul> </li> </ul>
벌칙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66조 1항 10호)

##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1) 기본개념

####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 2 조 6 호)
-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 □ 규제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별 사업자(예컨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됨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하기도 함

#### □ 적용제외

- 저작권법상 저작물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지적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허용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현재는 지정된 경우는 없음)  
다음의 요건(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 일상용품,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는 경우)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청하여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 받은 경우

## (2)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b>(제 31 조)</b></li> <li>• 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3년간 평균매출액에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b>(제 31 조의 2)</b></li> </ul>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b>(제 67 조 제 4 호)</b></li> <li>•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b>(제 67 조 제 6 호)</b></li> </ul>

## 7. 위반에 대한 제재(통합)

### 가. 시정조치

위반행위 유형	차별적 시정조치	공통적 시정조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인하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 중지명령</li> <li>-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명령</li> </ul>
불공정 거래행위	계약조항 삭제명령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주식처분명령, 임원사임명령, 영업양도명령, 채무보증취소명령,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명령,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	상동	

### 나. 과징금

위반행위	관련조항	과징금 부과 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 6 조	관련매출액의 3/100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
부당한 공동행위	제 22 조	관련매출액의 10/100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제외)	제 24 조의 2	관련매출액의 2/100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이내)
부당지원행위	제 24 조의 2	관련매출액의 5/100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이내)

## 다. 과태료

위반행위 유형	제재 내용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 허위자료 제출	1 억 이하(사업자나 사업자단체) 100 만원 이하(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 과태료
현장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2 억원 이하(사업자나 사업자단체) 5 천만원 이하(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과태료
심판정 질서 유지명령에 위반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라. 형사처벌

위반행위 유형	제재 내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위반,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제66조 규정 이외의 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불가)
각종 신고의무(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등) 위반, 허위 감정	1억원 이하의 벌금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상기의 형벌규정을 위반할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조항에 해 당하는 벌금형 과함.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마.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조문	내용
제56조 (손해배상 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I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 1. 목적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1.	<b>거짓·과장의 표시·광고</b>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b>기만적인 표시·광고</b>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b>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b>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b>비방적인 표시·광고</b>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예규로 규정

### 3. 영화상영관 관련 표시·광고의 특별 제한

#### 가. 영화상영관에서의 주류 광고의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항)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에 대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2항)
  - 이에 따라,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sup>4</sup>의 상영 전후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상영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

#### 나.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 확인기준』(2012.08.18. 시행)이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

4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상영가<sup>5</sup>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

<sup>5</sup>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4. 위반에 대한 제재

### 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아래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시정조치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임시중지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 ①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 ②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제8조 제4항)**

## 다.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제9조 제4항)

- ※ 상세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및 별표1,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규정

## 라. 손해배상

-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 제2항)

-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 마. 벌칙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 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②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인<sup>6</sup>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양벌규정, 제19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과태료

□ 위반행위에 따라 사업자등에게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 : 1억 원 이하</li> <li>■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1천만 원 이하)</li> </ul>	-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sup>6</sup>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 : 3천만 원 이하</li> <li>■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1천만 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ul>
<p>100만 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ul>

## 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외 제재

### (1) 『 국민건강증진법 』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제2호)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 과태료

과태료	위반행위
5천만 원 이하	-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 5. DO/DON'T

### [DO]

- 담당자는 표시·광고의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 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 부당한 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직접 부당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행하게 한 자임으로 영업사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 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 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홍보물이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사업장 등의 게시물 및 간판도 표시에 해당함을 숙지하여야 한다(상품 사용설명서, 사업장 간판).
- 대규모 광고메일발송도 광고에 해당되며, 표시·광고의 방식(수단)은 중요하지 않고, PC출력 자료도 다른 소비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광고에 해당한다.
- 표시·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진실성)하여야 하며, 소비자 오인성이 없어야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한다.
-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DON'T]

-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 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 1. 개요

#### 가.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나. 정의 및 적용대상

##### (1) 하도급거래의 정의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 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함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 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 (2) 적용대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위탁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

##### ■ 원사업자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자에 해당
- 중소기업 :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

## ■ 위탁행위

- 건설위탁,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

-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일정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2 조 5 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 조 3 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 조 4 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 52 조 ①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제외
- 중견기업 :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위탁 받는 경우

## 다. 하도급거래 단계별 규제유형

### (1)계약체결단계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제1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2) 계약이행단계**

- 선금금의 지급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부당반품의 금지
- 감액금지

## **(3) 대금지급단계**

- 하도급대금의 지급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2.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



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가. 발급상황

원사업자가 수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계약내용을 변경

## 나. 발급시기

(1) 제조위탁 :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

(2) 수리위탁 : 수리행위 시작 전

(3) 건설위탁 : 계약공사 착공 전

(4) 용역위탁 : 용역수행행위 시작

## 다. 서면내용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 (2)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라. 서면 미발급시 확인요청사항

- (1)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 (2) 하도급대금
  - (3) 위탁 받은 일시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회신발송

## 마. 서류보존대상

- (1) 발급 서면
- (2) 수령증명서
- (3)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기재 서류
-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기재 서류

- (5)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6)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가 기재된 서류
- (7)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바. 보존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서류<sup>7</sup>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 DO/DON'T

### [DO]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서 교부시 운송요율표, 손해배상처리기준과 같은 보충서면을 첨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견적물량과 주문물량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한다.

<sup>7</sup>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DON'T]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업계 표준에 준하지 않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나 전용단말기의 도입은 다수의 발주자와 거래를 하는 수주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합리성이 없는 과도한 도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된다.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3.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가.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 제1항)

#### 나. 부당한 특약의 종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제3조의4 제2항)

	부당한 특약
서면 미기재 사항 요구	원사업자가 발급한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원사업자 관련 비용 요구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입찰내역 외 사항 요구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예측불가 사항 불합리 요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특성 고려 없는 약정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 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다. Q&A

### ■ 계약체결과 별개로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가 입찰참가예정자 또는 수의계약예정자에게 배부한 서류 중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및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 서면과 별개로 작성된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서면 미기재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 라. DO/DON'T

### [DO]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DON'T]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강요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제1항)

## 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제4조 제2항)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 구성요건

### 일률적 단가인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할당금 공제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차별취급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착오, 오인 이용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라. Q&A

■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액을 금지하는 것인데,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 마. DO/DON'T

### [DO]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새롭게 단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출용품의 경우, 수출용과 내수용의 제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내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단가를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품의 경우 관세, 환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견적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정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

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가격 결정시 국제적인 가격지표가 있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비용 변동을 반영한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협의한다.

## [DON'T]

- 구매 담당자가 구매 관련 목표가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내수품과 수출품에 대해 동일한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운송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5. 감액금지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가. 위탁 시 정한 하도급 대금의 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 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제2항)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⑤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⑥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다. DO/DON'T

### [DO]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 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 [DON'T]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화된 새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그 밖의 규정

### 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 나. 선급금의 지급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 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을·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 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6조 제3항)

<b>지급기한</b>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 지연이율

- 지연이율 연리 15.5%(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준용

## 다.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1) 부당한 위탁취소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제1항 제1호)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임의성 판단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4) DO/DON'T

### [DO]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상이 된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원사업자는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는 책임으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전보상이나 물량 보전을 하더라도 수령거부(또는 지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수령 시에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수령증에 검사미완료 사실 및 향후 검사에서 하자 발견 시 조치계획 등을 기재).

## [DON'T]

- 당사의 보관 장소 부족, 불명확한 위탁내용·검사기준·납기일, 납기단축 통보,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계열사 등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한 경우 당사의 생산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당초 위탁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

### (1) 부당반품 행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제10조 제2항)

- 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② 감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2) DO/DON'T

#### [DO]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상이 된다.
- 반품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 전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해당 목적물의 납기일 이후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다만, 납품된 해당 목적물의 품질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납품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DON'T]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부당결제 청구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바.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 2)

## 사. 하도급대금의 지급

### (1)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 (2)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지급기일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참조

## (3) DO/DON'T

### [DO]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DON'T]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 자.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 차. 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③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 7.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대처방법

### 가. 위반에 대한 제재

#### (1) 형사처벌

하도급법	제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li> <li>■ 부당한 특약의 금지위반</li> <li>■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금지위반</li> <li>■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위반</li> <li>■ 부당반품의 금지위반</li> <li>■ 감액금지위반</li> <li>■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위반</li> <li>■ 기술자료 제공요구금지 등 위반</li> <li>■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li> <li>■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위반</li> </ul>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제30조 제1항)
보복조치 금지위반	3억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제2항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li> <li>■ 시정조치 불이행</li> </ul>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제2항 후문)

#### (2) 행정처벌

유형	내용
시정권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의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제25조의 5)
시정조치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의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 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제25조 제1항)

<b>과징금</b>	<p>아래 사항 등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제25조의3)</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li> <li>2. 부당한 특약의 금지</li> <li>3.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li> <li>4. 부당반품의 금지</li> <li>5. 감액 금지 등</li> </ol>
------------	---

## 나. 대처방법

유형	내용
<b>자진시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경우</b> 공정위 조사개시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li> <li><b>2.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시정한 경우</b> 대금미지급행위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미지급대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 ※ 벌점면제 : 경고를 받은 경우 (16.1.25. 시행) ※ 과징금 면제 : 16.7.25. 이후의 행위에 한함 (16.1.25. 시행)</li> </ol>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이행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협약의 체결**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 (1년, 1회)
우수	90점 이상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 (1년, 1회)
양호	85점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양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 (1년 1회)

## 8.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
협력업체 선정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			
입찰공고	<input type="checkbox"/>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로 계약체결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로 선정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발주 및 계약	<input type="checkbox"/>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 하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하도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 내지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서면 보관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관련 서류(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특약 검토	<input type="checkbox"/>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항목	점검사항	○	△	X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			
	□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 불량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대금 결정	□ 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토록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단가결정 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			
	□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input type="checkbox"/>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의 계약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input type="checkbox"/>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통보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 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부당반품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검사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나가기 전에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	△	X
	□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처리하였는가?			
	□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였는가?			
	□ 수출할 물품제조를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 로 교환하였는가?			
하도급 대금 감액	□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 한후,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였는가?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인하였는가?			
	□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켰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input type="checkbox"/>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하도급대금을 인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대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권과 별개로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처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대금지급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	<input type="checkbox"/>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 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시 10 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30 일 이내에 협이가 이루어졌는가?			
기술자료 요구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 요구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유용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업체나 계열사에 제공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였는가?			
사급자재 및 장비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였는가?			
경영간섭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 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 하였는가?			
경영 간섭 및 보복 조치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			



## V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V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

### 1. 목적

□ 보통 거래약관은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그들과의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을 의미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2. 약관의 의의 및 특징

#### 가. 의의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이와 같은 약관은 계약의 표준화·정형화를 통해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약관은 고객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면책조항, 채무의 이행, 계약의 해지 등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

- 따라서 약관법은 사업자가 이와 같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약관법 위반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 나. 약관의 주요 특징

-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일반성).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 반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를 불문
- 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개별적인 교섭(흥정)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손으로 쓴 것도 약관(수기약관)에 해당되나 구술로만 계약한 것은 약관이 아니다.
-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와 고객사이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한다. ○○약관, 계약서, 약정서, 규정, 규약, 규칙, 회칙, 특별약관, 특약조항, 부가약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나 별지로 되어 있거나 영업소나 출입구에 게시되거나 상관이 없으며, 약관이 소위 유일조항인지 다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 약관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 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개별 약정으로 약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약관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약관으로 남게 된다.

### 3. 약관법 주요 내용

#### 가.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1) 약관의 작성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 한글로 작성하고,
-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 (2) 명시·교부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조 제2항)

□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3) 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제3조 제3항 단서)

## (4)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법 제3조 제4항)

## 나.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4조)



## 다. 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통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작성자불리의 원칙).

## 라. 불공정약관조항

### (1)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6조 제1항)
-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6조 제2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2)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3)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

### (4)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6.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5)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6)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7)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8)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 (9)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마. 일부무효의 특칙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6조)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바. 표준약관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개정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 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제6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3 제7항)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 제8항)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19조의3 제9항)

## 4. 위반에 대한 제재

### 가. 권고 및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sup>8</sup>를 위반한 사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sup>8</sup>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벌칙

□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양벌규정, 제33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과태료

과태료	위반행위
5천만 원 이하	-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 원 이하	-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DO/DON'T

#### [DO]

-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고객의 이익은 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약관 변경은 계약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 약관 변경 시 고객은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약관의 존속,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 [DON'T]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Ⅶ. 소비자기본법



## Ⅶ. 소비자기본법

### 1.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4조)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3. 사업자의 책무

#### □ 위해방지조치

-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

#### □ 적절거래방법

-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2항)

#### □ 정보성실제공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제3항)

#### □ 개인정보취급

-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4항)

#### □ 손해배상

-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제5항)

## 4.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1항)

**제8조(위해의 방지)**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2항)

**제10조(표시의 기준)** ①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제3항)**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 **VI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Ⅷ.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 1.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2. 정의 및 규제 이유

#### 가. 전자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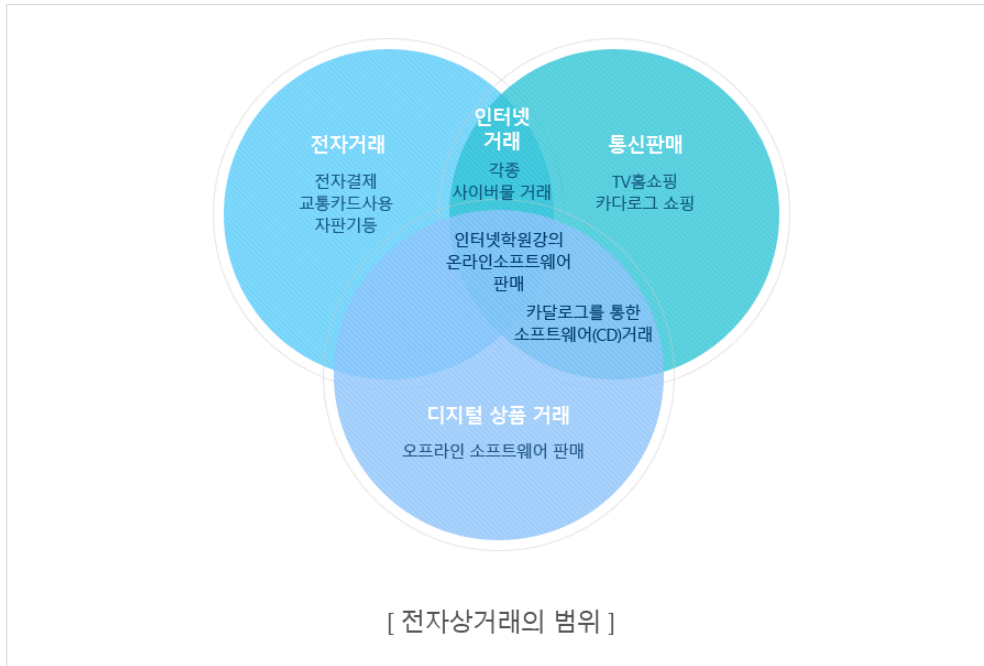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 나. 통신판매

-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예시 : 인터넷쇼핑,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

#### 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 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 라.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대금결제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큼
-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 3. 거래 단계별 사업자의 준수 의무

### 가. 영업 전 단계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외국사업자인 경우)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 제12조 제1항)

### 나. 청약의 유인 단계

- (1) 자기신원정보 표시

-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이버몰 이용약관 ·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법 제 10 조 제 1 항)**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함 **(법 제 13 조제 1 항)**

(2)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6월~5년) 보존하여야 함 **(법 제6조)**

## 다. 청약 단계

(1)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의 표시광고 및 고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 **(법 제13조 제2항)**

(2)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법 제7조, 법 제14조)**

(3) 청약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법 제15조 제2항)**

(4) 계약서의 송부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함 **(법 제13조 제2항)**

## 라. 영업단계

### (1) 기간 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 일 이내(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법 제 15 조 제 1 항)**
-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그 기간내에 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나 배송 등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함

### (2)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제15조 제3항)**

### (3) 전자적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 제8조 제3항)**

## 마. 청약의 철회 및 효과

### (1)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제 17 조 제 1 항)**

-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법 제 17 조 제 3 항)**

-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법 제 17 조 제 5 항)**

## (2) 대금의 환급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 18 조 제 2 항)**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법 제 18 조 제 3 항)**

-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 18 조 제 6 항)**

- 만약 소비자와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통신판매중개자 등)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법 제 18 조 제 11 항)**

## (3) 반환 배송비의 부담

- 법 제 17 조제 1 항과 같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법 제 18 조 제 9 항)**

- 그러나, 법 제 17 조제 3 항과 같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법 제 18 조 제 10 항)

(4)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법 제 18 조 제 9 항)
-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대금에다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 19 조)

(5)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 단, 2호 내지 5호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

(법 제17조 제2항)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4.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1조 제1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강요)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 5. 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적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권고 : 시정조치에 앞서 법위반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 <span style="float: right;">(제 31 조 제 1 항)</span></li> <li>• 시정조치 : 법위반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span style="float: right;">(제 32 조 제 1 항)</span></li> <li>• 영업정지 :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은 15 일~12 월까지로 법위반의 종류별, 횡수별로 다르며 위반행위가 반복될수록 그 기간도 길어짐 <span style="float: right;">(제 32 조 제 4 항)</span></li> <li>• 과징금 : 해당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5 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그 매출액 전액, 간접원인이 되는 경우 그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span style="float: right;">(제 34 조)</span></li> <li>• 과태료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00 만원에서 1 억원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span style="float: right;">(제 45 조)</span></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벌칙 (징역 또는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 조사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li> <li>•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li> <li>•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span style="float: right;">(제 40 조 ~ 제 44 조)</span></li> </ul>



**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CJ CGV

(주관부서 : 컴플라이언스파트)

## 《 목 차 》

### 〈 제 1 장 총칙 〉

- 제 1 조(목적)
- 제 2 조(적용범위)
- 제 3 조(용어의 정의)
- 제 4 조(조직구조)

### 〈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 5 조(선임)
- 제 6 조(역할)

#### 제 2 절 준법경영위원회

- 제 7 조(구성)
- 제 8 조(역할)
- 제 9 조(운영방법)

#### 제 3 절 코디네이터 및 준법경영실무위원회

- 제 10 조(구성)
- 제 11 조(역할)
- 제 12 조(운영방법)

#### 제 4 절 임직원

- 제 13 조(의무)

###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 제 14 조(자율준수의지의 천명)
- 제 15 조(자율준수가이드)
- 제 16 조(모니터링제도)
- 제 17 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제 18 조(제재 및 포상)
- 제 19 조(문서관리)
- 제 20 조(경쟁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 제 21 조(세부지침에 대한 위임)

[부칙] 제 1 조(시행시기) (2018.7.16. 제정)

[부칙] 제 1 조(시행시기)(2018.10.23.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시행 2018.10.23.]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은 준법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씨제이씨지브이(주)(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이하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2. “준법경영”은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법 및 회사 내규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 및 행동규범 등을 말한다.

### 제4조(조직구조)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파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1. 자율준수관리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자
2. 준법경영위원회 : 준법경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
3. 코디네이터 : 각 부서별 준법경영 일상 점검하여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

##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5조(선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역할)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총괄
2. 경쟁당국 및 규제기관의 협조 및 지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절 준법경영위원회

### 제7조(구성)

- ① 준법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8.10.23.)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자율준수관리자
  4. 위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② 준법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표이사가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자율준수관리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23.)
- ③ 부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하며, 위원은 전략지원담당, 국내사업본부장, 경영관리담당, 인사담당, 경영진단팀장, 법무팀장으로 구성한다. 조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시 해당 조직장으로 당연 선임된다.(개정 2018.10.23.)
-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담당한다.

### 제8조(역할)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설정
2. 준법경영 추진 계획 및 방침 사항 결정
3. 준법경영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운영방법)

- ① 준법경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경영위원회 구성원은 임시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코디네이터 및 준법경영실무위원회

### 제10조(구성)

- ① 회사는 각 조직(담당/본부/팀)마다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코디네이터의 지정 범위 및 구성인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기로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서 지정된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준법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컴플라이언스파트원이 담당한다.

### 제11조(역할)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 등 각종 지침 전파 및 홍보
2. 각 부서별 준법경영 일상 점검 파악 후 컴플라이언스파트에 공유
3. 준법경영 관련 이슈 발생 시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업 수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운영방법)

- ① 실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임시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사항을 각 코디네이터에게 회의 개최 3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절 임직원

### 제13조(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회사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파트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④ 모든 임직원은 법률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4조(자율준수의지의 천명)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천명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배포한다.

### 제15조(자율준수가이드)

- ① 컴플라이언스파트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가이드는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모니터링 제도)

컴플라이언스파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연 1회 이상 준법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조사
2.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3. 각 부서별 관련 현안에 대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 제17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컴플라이언스파트는 회사 내부에 준법경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전항의 교육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8조(제재 및 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권자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준수실태 점검결과가 우수하거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문서관리)**

준법경영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효율적, 체계적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 **제20조(경쟁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세부지침에 대한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이력**

2018년 10월 23일 1차 개정





# CHECK LIST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X
가격남용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활동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 적이 있는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한 적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적이 있는가?			

## 나. 부당공동행위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X
가격협약	<input type="checkbox"/>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조절	<input type="checkbox"/>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거래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의약품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시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업체 모임시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사 모임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였는가?			
문서작성시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 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 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1) 일반부당지원행위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
자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자산및상품등의 지원	<input type="checkbox"/>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인력지원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물량물아주기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X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input type="checkbox"/>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 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안전지대)			
기타	<input type="checkbox"/>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	△	×
협력업체 선정	<input type="checkbox"/> 협력업체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			
입찰공고	<input type="checkbox"/>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로 계약체결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쟁입찰로 선정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발주 및 계약	<input type="checkbox"/>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 하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하도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 내지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input type="checkbox"/>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서면 보관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관련 서류(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특약 검토	<input type="checkbox"/>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항목	점검사항	○	△	X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			
	□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 불량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대금 결정	□ 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토록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단가결정 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			
	□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input type="checkbox"/>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의 계약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input type="checkbox"/>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통보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 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부당반품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가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검사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나가기 전에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	△	X
	□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처리하였는가?			
	□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였는가?			
	□ 수출할 물품제조를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 로 교환하였는가?			
하도급 대금 감액	□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 한후,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였는가?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인하였는가?			
	□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켰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input type="checkbox"/>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하도급대금을 인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대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권과 별개로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처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대금지급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	<input type="checkbox"/>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 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시 10 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30 일 이내에 협이가 이루어졌는가?			
기술자료 요구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 요구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유용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업체나 계열사에 제공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	△	×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였는가?			
사급자재 및 장비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였는가?			
경영간섭	<input type="checkbox"/>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 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 하였는가?			
경영 간섭 및 보복 조치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편람**

---

본 저작물은 CJ CGV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산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외에 배포 및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